

표준약관 제10056호

제1조 (목적)

이 계약은 (주)교원라이프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(이하 '상조 및 웨딩서비스'라 한다)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.

제2조 (회원의 가입)

- ① 회사로부터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 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
-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신청 시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.
-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.

제3조 (단체회원의 가입)

-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.
-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 및 웨딩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,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.
-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,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.

제4조 (철회권의 행사)

-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 행사 할 수 있다.
- ② 재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재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, 회원은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0%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
제5조 (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의무)

-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, 납입횟수는 회원증서에 기재한다.
-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,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.
-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,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, 거래원장,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 (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)

-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,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감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제7조 (비용의 추가 부담)

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상품금액의 10%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제8조 (중도금 및 잔여 납부금의 납부)

- ① 회원이 월납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이 웨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웨딩화보촬영 7일전까지 중도금으로 상품금액의 55%를 납부하여야 하며, 메인웨딩 7일 전(본식)까지 잔여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 (주소변경 통보의무)

-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,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.

제10조 (상조 및 웨딩서비스의 이용)

-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,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, 회원의 직계비속, 회원이 지정한 자는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 및 웨딩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 및 웨딩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상조 및 웨딩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. 단,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 (단체계약과 상조 및 웨딩서비스)

-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 및 웨딩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만큼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.

제12조 (상조 및 웨딩서비스의 제공지역)

-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 및 웨딩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,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도서지역(단,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가능)을 제외한 회원이 지정된 전국의 장례 또는 혼례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나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근거리 동급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③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 및 웨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아울(연 6%)을 가산하여 반환하며, 지연 시 제14조 제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상조 및 웨딩서비스의 내용)

- ① 상조 및 웨딩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. 단, 회사는 확정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,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 및 웨딩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.

제14조 (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)

-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연 20%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,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 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
제15조 (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)

- ① 회원이 상조 및 웨딩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,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 단,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 및 웨딩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.
 - ◆ 환급율표 별첨 참조
 - 〈해약환급금 산식〉
 - 정기형 상품(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)의 경우
 해약환급금 = 납입금 누계 - 관리비 누계 - 모집수당 공제액 - 부정기형 상품(정기형을 제외한 상품)의 경우
 해약환급금 = 납입금 누계 x 0.85
-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웨딩화보 촬영 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기제공한 웨딩화보 촬영서비스 상당액(상품금액의 55%)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.
- ⑥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20%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가입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
 회원본인 : 신분증, 회원증서, 해약신청서
 대리인 : 위임장,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, 회원증서, 해약신청서
- 가입자와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
 회원본인 : 신분증, 회원증서, 예금주의 동의서, 예금주의 인감증명서, 해약신청서
 대리인 : 위임장,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, 회원증서, 해약신청서, 예금주의 동의서, 예금주의 인감증명서

- ⑧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 및 웨딩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회원지위의 양도·명의변경)

- ① 회원은 상조 및 웨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-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·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제17조 (금융정보제공동의서 요청 및 제공)

-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,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.

제18조 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

-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

[자동이체 약관]

- 1. 지정한 이체일(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에 회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자동납부 처리합니다.
- 2. 자동납부를 위해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, 예금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.
- 3. 이체지정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, 처리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의 임의로 정해집니다.
- 4. 계좌 잔액이 자동이체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잔액만큼 출금 처리 합니다.
- 5. 본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회사와 회원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6. 회원이 고의적으로 출금이체 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, 회사에서 임의로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7. 회원은 매월 대금결제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할부금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8. 지정한 이체일에 출금되지 않으면, 다음 이체일에 재출금되며, 다음 이체일에도 출금되지 않으면 출금이 될 때까지 다음 이체일에 계속해서 출금을 시도합니다(이체일은 5일, 10일, 15일, 20일, 25일, 말일 중 하루임).

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 고시사항

- **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**
 -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규정에 의해 환급합니다.
 -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- **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**
 - 상품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
- **고객 불입금 관리방법**
 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우리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총고객환급의무액	상조관련자산
5,702,848,575원	11,859,435,276원

※ 2013년 12월 결산 기준
 * 비감사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
 * 고객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.

고객상담전화 1588-0060 야간상황전화 080-555-1234

(주)교원라이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교원내외빌딩